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665 |
|----------|-----|

2019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4일, 김경영 의원 외 15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경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2017.3.15)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 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 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공해차량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는 전 지역이 해당됨.

운행제한 대상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sup>1)</sup>을 받은 총중량 2.5톤 이상<sup>2)</sup>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아니한 경유자동차가 해당됨.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sup>3)</sup>으로 지정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sup>4)</sup>’)에 대하여 「자동차

---

1)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중 매연농도가 10%이하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유예대상에 해당하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2) 현재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만 운행제한 대상이지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됨.

3)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17.3.15),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18.8.6)

4) 한양도성 내부(16.7km<sup>2</sup>), 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8개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7개동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2019년 하반기부터 상시 제한<sup>5)</sup>할 예정에 있음.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비교〉

| 구 분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
| 시 기  | ◦ 상시                                   | ◦ 상시                           |
| 지 역  | ◦ 서울시 전 지역                             | ◦ 한양도성 내부<br>(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 대 상  | ◦ '05년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
| 부과횟수 | ◦ 1일 1회 부과                             | ◦ 1일 1회 부과                     |
| 과태료  | ◦ 1회 경고 후 매 위반시 20만원 (최대 200만원)        | ◦ 25만원 (미확정)                   |

-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기 시행중에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제 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 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간 충돌의 소지가 있음.

또한, 기 시행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2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2중

5)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부과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sup>6)</sup>’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sup>7)</sup>’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녹색교통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6)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관련법령]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

-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12.31.>

###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665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 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 <p>제2조(정의) -----<br/>-----<br/>-----.</p> <p>1. ~ 4. (현행과 같음)<br/><u>&lt;신설&gt;</u></p>  | <p>제2조(정의) -----<br/>-----<br/>-----.</p> <p>1. ~ 4. (개정안과 같음)<br/>5. <u>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 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u>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u>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u> 지정한 특별대책 지역을 말한다.</p> |
|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br/>-----<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p> | <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① <u>시장은</u> <u>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u> -----<br/>-----<br/>-----<br/>-----<br/>-----.</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시장은</u> <u>녹색교통지역에</u></p>  |

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  
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  
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  
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 설&gt;</u></p><br><br><br><br><br><br><br><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p> <p>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u>이란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u>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u></p><br><br><br><br><br><br><br><p>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p> <p>① <u>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u> -----<br/>-----<br/>-----<br/>-----<br/>-----<br/>-----<br/>-----<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u></p> |

」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